
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1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박희승 · 서미화
손명수 · 황명선 · 황운하
신장식 · 서왕진 · 이학영
이해민 · 정춘생 · 차규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예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·지휘체계 및 합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,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·감독권을 부여하고,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이른바 ‘준4군체제’에 따른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 등).
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상륙작전을 주임무”를 “상륙작전 및 전략기동작전작전을 주임무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참모총장”을 “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공군참모총장”을 “공군참모총장,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”를 “각군 및 해병대 소속 각 1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본문 중 “참모총장”을 “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각군”을 “각군 및 해병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참모총장”을 “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병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
해병대는 이 법에 따른 해병대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각군의 주임무 등) ① (생략)	제3조(각군의 주임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, 해병대는 <u>상륙작전을 주임무</u> 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·훈련을 한다.	② ----- ----- <u>상륙작전</u> <u>및 전략기동작전을 주임무</u> ----- ----- -----.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국방부장관의 권한)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<u>참모총장</u> 을 지휘·감독한다.	제8조(국방부장관의 권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참모총장</u> <u>및 해병대사령관</u> -----.
제10조(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)	제10조(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)
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, 해군에 해군참모총장, 공군에 <u>공군참모총장</u> 을 둔다.	① ----- ----- <u>공군</u> <u>참모총장</u> , 해병대에 <u>해병대사령관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,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·감독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제12조(합동참모본부)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.

② . ③ (생략)

제13조(합동참모회의) ① (생략)

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,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.

③ . ④ (생략)

제15조(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)

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,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

제12조(합동참모본부) ① -----

-----각
군 및 해병대 소속 각 1인의-----

-----.

② . 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합동참모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참모총장 및 해병대
사령관-----
----- . <단서 삭제>

③ . 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)

① 각군 및 해병대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. -----

하는 바에 따라 각군 <u>참모총장</u>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<u>해병대사령관</u>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.	-----<u>참모총장</u> 및 <u>해병대사령관</u>-----. <u><삭 제></u>
---	---